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22;28(3): 1-16
<http://dx.doi.org/10.34281/kabp.28.3.1>
pISSN 2092-6553 eISSN 2671-5872

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이 규 호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Abstracts〉

Life Ethics in Buddhism and Euthanasia

Lee, Kyu - Ho

(Professor of U1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uthanasia, which is a matter of bioethics, including leg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with acting life and chiropractic ethics, and furthermore, it aims to summarize Buddhism's bioethics and euthanasia legal issues, especially the current law in Korea.

Individual organisms to life metabolize, reproduce, and evolve, so if you understand life phenomena as these three concepts, they are all interdependence and acting, so Buddhism's worldview is an acting worldview that teaches you to escape obsession by realizing that the basis of all worlds is acting. Given that the Buddhist ethics of Jiak Su-seon require discrimination between good and ba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sense itself,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judge good and bad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human life, such as euthanasia, from a Buddhist perspective, it can only be judged as it is in the state of Muah and Gong. In this state of Muah and Gong, since mercy is bound to spread beyond oneself to self-immolation, all judgments of Buddhism related to bioethics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mercy.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in the case of negative

but passive euthanasia,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limitedly recognized by associating it with death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trend that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the case of active euthanasia, it is common to see that it is illegal to protect life and prevent abuse of euthanasia, but for patients with imminent fraud and modern medical conditions, it is considered as a legitimate act that respec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Key Words

Buddhist bioethics and euthanasia, Buddhism and euthanasia, Buddhism and passive euthanasia, Buddhism and dignity, Buddhist bioethics and passive euthanasia.

|| 목 차 ||

- I. 서언
- II. 불교의 생명윤리
- III. 안락사
- IV. 결어

I. 서언

불교는 연기론적 세계관 · 인간관 · 생명관과 지악수선(止惡修善)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윤리(Bioethics)¹⁾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²⁾ · 악행 금지의 원칙 · 선행의 원칙³⁾ · 정의의 원칙⁴⁾ 등이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선행 연구된 ‘불교의 안락사관 연구’나 ‘안락사 문제에 대한 불교적 연구’ 등⁵⁾과 달리, ‘불교와 생명’을 대주제로 하여 시리즈로 과거 교불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불교와 사형제도’,⁶⁾ ‘불교와 낙태문제’⁷⁾ 등에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바 전술한 불교(세계·인간·생명·윤리)관의 견지

* 본 논문은 2022년 7월 9일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생명윤리(Bioethics)란 생명을 의미하는 bio와 윤리를 의미하는 ethics의 합성어로서,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사회 및 생물권에 응용할 경우 일어나는 철학적·윤리적·법적·사회적·경제적·의학적·환경적·종교적·인류학적 문제를 취급한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안전법이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호, “생명윤리법과 판례 고찰”,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1, 41-58쪽 참조.
- 2) 연명의료 문제는自律性이 생명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으로, 윤리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 있기에 양자가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본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특정 윤리관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작동할 필요가 있다. 김정오 외 5인 편집,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22, 352쪽.
- 3)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진의 책무를 말한다. 한편 적극적 안락사가 선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등의 문제는 ‘삶의 질을 고려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자율성의 원칙이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4) 정의 문제에서는, 최소한 의료혜택을 받은 권리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 5) 선행연구에는 꽈민연, “불교의 안락사관 연구”, 「철학논총」 58, 2009 ; 김종임, “안락사 문제에 대한 불교적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신성현, “안락사에 대한 불교윤리적 논의”, 「종교교육학연구」 31, 2009. 참조.
- 6) 자세한 사항은 이규호, “불교와 사형제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6, 86-102쪽 참조.
- 7) 자세한 사항은 이규호, “낙태와 불교의 생명관”, 「학회창립 30주년 한국교수불자대회 자료집」,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8, 183-203쪽 참조.

에서 생명(生命 倫理) 영역에 있는 안락사의 문제를, ‘II. 불교의 생명윤리’ 단원에서는 불교의 세계관·인간관·생명관·윤리관의 시각에서 검토한 후 ‘III. 안락사’ 단원에서는 안락사의 개념·유형·찬반 논의는 물론 법적으로도 검토하여 고찰하고, ‘IV. 결어’ 단원에서 전술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자 한다.

II. 불교의 생명윤리

1.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

먼저 불교의 세계관은 평등적 세계관, 연기론적 세계관이다. 불법을 신앙하는 종교인 불교의 목표는 신앙과 수행으로 고(苦)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르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연기, 특징에는 무상과 무아가 있다. 따라서 세상의 근본 질서가 연기⁸⁾에 있으므로 무상·무아라는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치를 깨우쳐 탈집착하면 열반에 이른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이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에 가서 무상·무아가 ‘무자성의 공’이라는 맥락⁹⁾에서 논의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화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이 인연에는, 불교 세계관의 근거인 외인연¹⁰⁾과 불교 인간관의 근본인 내인연¹¹⁾이 있다. 외인연으로의 연기는, 고정된 성품이 없기에 그저 인연 따라 화합하여 일어날 뿐이고 여러 인연 각각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은, 화엄경의 중중무진 연기(重重無盡緣起) 사상으로¹²⁾ 이어지게 되며, 이런 연기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무시무종 직간접의 조건들(因緣)의 연쇄적 그물망(因陀羅網)으로 모든 것이 쟁쟁이 겹

8) 불교의 목표가 누구나 봇다가 되는데 즉 成佛에 있다고 할 때, 봇다란 깨달은 자를 가리키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9) 상호의존하여 성립하는 연기이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無自性의 空’이라는 것이다. 초기불교 연기관(緣起觀)이 대승불교에 이르러 공관(空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10) 외인연이란 종자, 땅, 물, 불, 바람, 허공, 시절, 사람의 노력 등이 화합하여 짹이 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상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가리킨다.

11) 내인연이란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 등 각자가 앞의 것으로 인해 뒤의 것이 생기는 것, 즉 중생의 고통이 어떻게 상관적으로 발생 소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12) 세계 내의 각 대상은 다른 모든 대상을 서로 포함하며, 사실상 각 대상은 서로 다른 모든 것이 되는 것이므로, 한 티끌 먼지에도 무수히 많은 봇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쳐 용접하는 것(重重無盡緣起)이 마치 ‘연씨가 서로 겹쳐져 있는 것’과 같아서 ‘우주는 연화장세계’라고도 한다. 법성이 본성의 원리이고 법계를 전체의 범위로 하는 불교적 세계(法界 自然)에서는, 모든 존재자가 상의성(相依性)·연생성(緣生性)·공성(空性)을 법으로 하여 일치된 한 생명의 바다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근본이 내인연에 있는 불교의 인간관은,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달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적 인간관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가진 사물이 자신이 지은 행위의 영향력(業力)에 따라 다양한 생을 살며 생로병사의 고를 반복 흘러가는 것을 윤회(輪回)라고 하고¹³⁾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解脫)이라고 하여, 인간을 윤회와 해탈의 과정에서 육도(윤회의 여섯 단계) 중 하나인 인(Manusya 마纽샤, 능히 생각해서 일을 꾸미고 사유 관찰하기)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간은 분별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분별의 지혜로 전환될 수 있기에 윤회에 머무를 수도 해탈에 이를 수도 있다.¹⁴⁾ 비록 무지(無明)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해매는 미계(迷界)에 있으나 ‘자각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오계(五界)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미계·오계의 복합성으로 되어 있고 ‘현실성과 가능성’ 또는 ‘염과 정’의 구도에서 수행된다는 것이다. ‘심성본정 객진소염’이라는 정과 염의 구조를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에서는 알라야식(생멸하는 현상의식 토대가 되는 근본 마음)을 통해 파악하는 바, 우리는 단지 찰나 찰나 생멸하는 마음이 잠시 지속되는 것을 자아라는 개념으로 둑어 집착하고 있다.¹⁵⁾

법을 본 자를 부처라고 하는 이상, 부처를 되게 하는 근원은 법이고,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이 일체의 근원으로서의 법성이며, 법성은 바로 연기성과 공성을 의미하므로, 불성은 곧 법성이고 공성이 된다.¹⁶⁾ 인간의 본성인 불성이 공성인 이상, 인간의 그 어떤 본성

13) 우주의 다양한 공간에서 물질이 정교히 모여 결합, 우연히 반복되며 복제성을 가진 문자가 출현했고 이들이 갈애(복제 유파)를 가지면서 윤회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자연선택이론과 사성체’에 관해서는 이일하, “생명의 진화와 불교”, 「불교문화」, 대한불교진흥원, 2021.11, 18-23쪽 참조.

14) 인간의 이런 면을 십이연기로 상론하면 다르마(dharma)에 대해 무지하므로(無明),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앞세워(行), 물질과 비물질의 일체를 분별 인식한 후(識,名色,六入,觸) 거기서 즐거움과 즐겁지 못함을 느껴(受), 즐거운 것을 갈망 집착하니(愛,取). 그것을 영원히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有), 무상한 생로병사에 괴로워하는 것(生,老,死)이 된다. 김종욱, “불교생명윤리총론”,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06, 26쪽.

15) 이런 자아의식과 대상의식을 총괄하여 마음의 흐름(心相續)에서 주체가 되는 일종의 잠재의식이 로 알라야식(제8식,心)인데, 이 알라야식은 정과 염, 선과 악의 의지처가 되며 마음(心)이 정(淨)이나 염(染)이 되고 행동이 선이나 악이 되는 것은 근저에 알라야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식사상에서는 인간의 상황에 담긴 미오나 염정의 이중적 복합성과 전미개오(유식의 표현으로는 轉識得智)의 가능성을 알라야식 이론을 통해 나름대로 종합하나, 심성본정보다는 (범부의 마음 상태를 해명하는) 객진소염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의 여래상 사상에서는 심성본정에 강조점을 두고 객진소염과의 통합을 모색한다. 김종욱, “불교생명윤리 총론”,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 2008.5.30., 15쪽 참조.

16) 人間 성불의 가능 근거와 존재 근거가, 공성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불성과 공성에 대해서는 윤종갑, “열반

도 실체화·절대화해서는 안 되므로 인간의 형성에서 중요한 계기인 식(識) 또는 알라 야식도 (연기적 관계성의 산물로 인간이 윤회하여 발생한다는) 인연화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절대 유일의 주체로서 실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2. 불교의 생명관과 윤리관

먼저 불교는 제행무상·제법무아·열반적정의 삼법인이 생명관의 핵심이며, 불교의 생명관은 연기론적 생명관¹⁷⁾이다. 우리가 현재 탐구하고 있는 생명체인 중생의 원어 산스크리트 sattva는 존재자(being, entity)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범부(인간) · 유정(생물) · 중연화합생(생태계를 비롯한 존재자 일반)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불교적으로 생물에 해당하는 것이 감수성(情)과 의지성(行)과 행위성(業)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자인 유정(有情, sattva) 즉 중생이다.¹⁸⁾ 개체 생명으로서의 유기체(organism)에는 대사¹⁹⁾와 생식²⁰⁾과 진화²¹⁾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명현상을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개념 모두가 관계적 개념으로 상호의존성과 연기성²²⁾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무상과 무아²³⁾와 무자성의 공성으로 표현되는 연기성²⁴⁾은, 연쇄성과 조건들의 철저한 비실체성을 내포한다.²⁵⁾

경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공과 실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5, 104-115쪽 참조.

- 17) 여기에 생물학적 의학적 관점의 생명과 윤회론적 관점의 생명, 이중적 의미가 있다.
- 18) 정이란 감각적인 수용 능력을 의미하는 정식(精識)이나 업상(無明業相)을 의미하는 업식(業識)을 말하므로, 유정이란 ‘감각적 수용 능력을 지니고 맹목적 삶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자이다.
- 19) 대사(metabolism)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외부로부터 물질과 영양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20) 생식(reproduction)이란 개체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유전 현상을 가리킨다.
- 21) 진화(evolution)란 변이에 의해 환경 적응력이 증가하는 것, 즉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발전의 과정을 말한다.
- 22) 관계적 개념으로서의 대사와 생식과 진화를 특성으로 하는 생명체란, 내외부의 일체 요소들이 끊임없이 순환 교류하면서 자신의 고유함을 전승시켜가는, 수많은 세월에 걸쳐 주변과 상호의존의 관계 작용을 계속해온 누적적 역사의 산물이며, 이런 유기체로서의 개체 생명의 본질은 불교적으로는 연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는 데 반해, 서양에서는 자아의 독립성과 절대성을 주장한다.
- 24) 우리는 세상만물이라고 하나,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온갖 인연이지 물(物)이 아니다.
- 25) 연기를 무수한 조건들의 끊임없는 연쇄적 지속이라고 볼 때 ‘계속 변화’가 칠나 생멸을 험축한다면, ‘계속 유지는’ 입력의 전달자나 종자의 보존자로서 알리야식이나 中有를 필요로 한다. 끊임없이 칠나마다 생성 소멸한다 해도, 관계성의 한 양상으로서 나름대로 성질을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지닐 수 있다. 마치 강물이 물결들의 끊임없는 부침 속에 계속 변화하며 흘러가듯, 임의의 기간 내에 나름의 모양, 깊이, 속도, 순도 등

불교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연기론(인연 관계론)이고 이 관계를 다루는 조건 중 어느 하나도 관계의 일개 항에 불과할 뿐 그 관계를 벗어난 실체적 독립적인 요소는 없는 것이다.²⁶⁾

불교의 윤리관을 보면, 불교 윤리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분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불교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무명, 즉 오온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오온의 집합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⁷⁾ 불교 윤리²⁸⁾의 기본 입장은 칠불통계(七佛通戒), 즉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止惡修善의 윤리관)는 것이다.²⁹⁾ 이는 선인락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³⁰⁾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구분 분별해야 하는데 ‘윤리학에서 논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상대적인 선은 부귀영화라는 장래의 즐거운 과보를 약속함으로써 인간에게 집착·번뇌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³¹⁾ 선악의 분별이 집착·번뇌로 나타나는 이상, 지악수선을 행한다고 해서 고(苦)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번뇌심 자체를 없애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최고선이자 절대 선³²⁾인 것이다.³³⁾ 이처럼 선악 이전의 본원적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

을 간직하면서 흘러가는 것과 동일하다. 중유(中有)나 식(識) 등을 활용해 생과 생 사이의 상속을 이해하고 수정할 때 이 중유나 식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해서 중유나 식을 영혼과 같은 실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 김종우, 앞의 책, 36쪽.

- 26) 中有(영혼)를 비롯한 삼사(三事)가 회합하여 태아가 형성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소로서의 중유나 식이 아니라), 회합이라는 과정적 관계성 그 자체이다. 연기론(緣起論)과 오온론(五蘊論) 사이의 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인연의 관계론이 있고 이에 대한 해명으로서 조건적 요소론이 있는 것이다. 요소들이 실체로서 먼저 있고 이를 간의 조우로서 관계론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필수화하여 거기에 절대적 본질성을 부여한 후 이 본질적 요소가 등장해야만 생명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관계론적 조건론인) 오온(색은·수은·상은·행은·식은) 연기론을 요소적 실체론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진 스님, “무아설에 대하여”, 「불교와 사회의 만남」, 자우출판사, 2009, 286-287쪽.
- 27) 오온에 대한 무지, 즉 無我(존재의 무실체), 行(무상성에 대한 무지로 맹목적 삶 의지 앞세움), 識, 名色, 六入, 觸(대상을 분별인식한 후), 受(즐거움여부를 느끼), 受取(즐거운 것 집착), 生 老死(무상한 생로병사에 괴로워 함)이다. 김종우, 앞의 책, 26쪽.
- 28) 불교윤리는 다양성을 전제한 평화윤리이자, 다름의 미학이다. 이는 연기윤리이며 바쁨의 가치이다.
- 29)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많은 선을 받들어 행하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 30) 좋은 일을 하면 즐거운 과보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괴로운 과보가 온다.
- 31) 상대적 분별의 근저에 번뇌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세속의 선을 유루선이라고 한다.
- 32) 여기에서는 탐욕(貪)과 분노(嗔)와 무지(痴)로 인해 끝없이 새어 나오는(漏) 번뇌가 마침내 차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루선(無漏善)이라고 한다.
- 33) 선악 이전의 청정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를 윤리와 선악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써,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저절로 세간의 윤리 규범에 상즉(相即)하여 전혀 잘못됨이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곳이 선악 초월의 자유(自由)와 선악 즉응(即應)의 자재(自在)가 만나는 곳이며 세속선과 승의선, 상대적 선과 절대적 선, 세간적 선과 출세간적 선, 유루선과 무루선이 융통하는 접점인 것이다. 김종우, 앞의 책, 39쪽.

이 불교적 종교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관점에서 취급하는바, 업(業, karma)의 산스크리트 어원에서의 ‘하다(行爲)’도 의도적으로 ‘하다(意志)’이고 결과적으로 영향력인 것이다.³⁴⁾ 따라서 불교에서 업은 복합적인 개념인 것이다. 인과업보³⁵⁾ 사상에서 유념할 것은 즐거운 과보에 대한 기대가 집착과 번뇌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인과업보에 속박되지 말고³⁶⁾ 그로부터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³⁷⁾

이렇게 볼 때 안락사 등 인간생명과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해 불교적 시각에서 선악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선악 너머의) ‘절대 선’을 지향하므로 선악 이전의 경지인 ‘무아(無我)와 공(空)의 경지’에서 과연 실상(實相) 그대로 여법(如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무아와 공의 경지에서는 자타불이로 자비가 확산될 수밖에 없기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불교의 모든 판단은 자비 실천 기여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안락사

1. 개념

안락사(安樂死, Euthanasie, Sterbehilfe)로 번역되는 euthanasie는 eu(good)와 thanatos(death)의 합성어(그리스어)로서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나,³⁸⁾ 현대사회에서 ‘유타나시아’란 불치의 중병에 걸려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한 경우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위적 행위를 의미한다.³⁹⁾

34) 업에도 의도나 동기로서의 ‘의지’, 그런 의지를 동반한 활동인 ‘행위’, 그런 행동으로 남겨진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35) 의지를 지닌 인간이, 업을 일으켜 자신의 善·惡업에 따라 생사를 유전하면서 고락의 과보를 받는다.

36)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귀히 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의 진정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과법을 믿는 태도가 확산된 경우 찾을 수 있다(미산 스님, “생명조작”,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공개심포지움」, 2008.5.30., 15쪽). 불교적 선악 판단 기준은 번뇌를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이정훈, “소극적 안락사와 법과 종교의 경계에 선 성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9, 102쪽).

37) 이는 상대적 선의 세계와 선과 악 모두를 초월하는 절대적 선의 세계가 상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조화에 기반한 인과업보사상이 ‘선악에 대한 불교적 도덕판단 기초’인 것이다. 불교의 윤리적 행위의 목표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 것이다.

38) Margaret C. Jasper, The Right to Die, NY:Ocean Publications, Inc., 2000, 7쪽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병을 저주로 인식하고 중병에 걸린 자의 자살을 용인한 바 있다. 안락사라는 말은 원래 고통을 면하기 위한 자살의 의미라고 보기도 한다(이정훈, 앞의 논문, 98쪽).

법적으로는 단지 고통만 제거하고 생명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진정 안락사, echte euthanasie)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는 살인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⁴⁰⁾ 다만 안락사가 생명 단축을 가져오더라도 현대의학상 불치의 질병으로 사기가 임박하고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고 환자가 진지하게 안락사를 원하고 안락사의 목적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제거나 감경에 있고 의사가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리 형법에는 촉탁·승락에 의한 살인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⁴¹⁾)로 위법성 조각이 된다⁴²⁾고 보기도 하나, 전술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 적극적인 안락사(direktive-aktive Euthanasie)는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남용 방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⁴³⁾이다.⁴⁴⁾

다만 전술한 견해 중에는 사기(死期)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불치의 환자 중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생명 유지상 필요한 의료조치를 부작위하거나 부착된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소극적 안락사 또는 부작위 안락사), 생명유지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존중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Selbstbestimmungsrecht)⁴⁵⁾을 존중해서⁴⁶⁾

- 39) 존엄사(尊嚴死)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므로, 육체적인 고통 없는 죽음을 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편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웰다잉(well-dying)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0) 형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진정 안락사로, 이는 보통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선종수, “개별범죄론 I”, 형사정책 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형사법연구, KIC, 2019, 258쪽.
- 41)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실질을 결한 행위로, 위법성의 실질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로 구성되므로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이익형량 등의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대판 1986.9.23., 86도1547).
- 42)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83, 403-407쪽 ; 정영일, 형법강의총론, 학림사, 2013, 218쪽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 법문사, 1986, 276쪽 ; 안동준, 형법총론, 학현사, 1998, 139쪽 ; 이규호,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19, 145쪽. 특히 정성근 교수는 고통에 의한 사인가 고통에서 해방된 사인가를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야 하며 사기에 절박한 자의 동의를 전제해야 가능하고 사기 절박자의 격통을 제거하는 의료임무인 치료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한다(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2, 322쪽).
- 43)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332쪽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276쪽 ; 배종대, 형법각론, 흥문사, 1997, 62쪽 ;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임귀속”, 법문사, 2003, 30쪽.
- 44)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라도 생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인한 죽음의 자기결정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이경훈, 앞의 논문, 103쪽). 따라서 미국 오레곤주 안락사법,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들어 적극적인 안락사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이루어진다면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251쪽).
- 45)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직업양심에 의거 환자의 양립 불가한 두 가치 중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했다면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9. 5. 21, 2009도4407).
- 46) 품위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할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할 권리인 인정하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찬반양론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복 불가한 사망단계에서 미리 의사를 밝힌 경우, 즉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의 평소 신념 가치관에 비추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행사 기회가 주어지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서 촉탁·승낙 살인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전형이 되고 있다.

2. 유형

안락사는, 인위적인 적극성 여부에 따라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독극물이나 약물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능동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안락사)로 나누어 볼 수 있고,⁴⁷⁾ 목적이 생명 단축인가 아니면 고통 경감인가에 따라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분류할 수 있다.⁴⁸⁾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의학적 입장에서도 불허되거나와 법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아 환자의 고통 제거 수단으로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따라서 만약 환자의 명시적인 촉탁으로 적극적 안락사가 이루어졌다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일반살인죄가 될 것이다. 윤리적·법적인 문제 외에도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은 후회나 상실감 등의 문제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⁴⁹⁾

의사 조력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여론의 찬성이 70% 내외가 되자 미국 의료계 역시도 50% 내외 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베몬트, 워싱턴, 뉴저지 일부,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⁵⁰⁾ 등은 이미 일정한 조건⁵¹⁾ 하 이기는 하나 조력 자살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환

라도 연명 치료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김정오 외 5인 공저, 앞의 책, 350-351쪽).

47) 일본의 경우, 통상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보류함으로써 사기(死期)를 앞당기는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거부 의사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호자나 의사 등의 작위의무를 제거하고 이에 법적 정당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informed consent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있는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 강제는 할 수 없다고 본다(甲斐克則, “安樂死·尊嚴死”, 『刑法の争点』, 有斐閣, 2007, 37頁). 대판 2009. 5. 21,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참조.

48) 직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더라도 남용위험과 생명보호의 차원에서 위법으로 불허된다고 보지만,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의 반대의사가 없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적법하고 보거나 허용된 위험으로 보게 된다.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165-166쪽 ;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149쪽.

49)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 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말리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케이스도 있다.

50) 스위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경제적 부담, 진전없는 치료로 인한 희망 고문,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51) 환자가 성인일 것,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것을 확인했을 것, 의사들이 환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것,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의사들이 확인했을 것,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았을 것, 조력 자살 요청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

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려고 투여한 약물이 의도치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한 경우인) 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와 구별하여,⁵²⁾ 의사 조력 자살을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로 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³⁾ 일본에서도 자살관여죄(형법 제202조)의 해석상 의사에 의한 자살 방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하다⁵⁴⁾고 보고 있다.

환자 본인의 자발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환자 본인의 의지로 안락한 죽음을 선택하는 자발적 안락사(사실상 자살)와 환자 자신은 죽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소극적 안락사 또는 독극물 주입 등의 적극적 안락사인 비자발적 안락사(사실상 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⁵⁾

3. 찬반 논의와 연명의료 결정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보면, 찬성론자들은 ① 인간은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당장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경감시켜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 살려두고 사회가 보살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위선이라는 점 ② 극한의 고통에 처한 환자가 죽여달라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① 건강 수명과 웰 다잉⁵⁶⁾이 중요시되는 현대에는, 질적으로 높은 삶과 삶의 안락한 종결을 원한다는 점 ② 최대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별의 시간을 한 후 안락한 입종을 맞이하길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③ 유족들도 연명치료를 시도 했다가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떠나보낸 것 같아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것, 언제든지 조력 자살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을 것 등의 공통된 조건이 있다.

52)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법죄화론”,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 148-149쪽.

53) 이는 의사나 제3자가 화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모르핀 등을 투여하여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형법 제21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54) 甲斐克則, 앞의 논문, 37頁.

55) 우리 형법상 살인의 죄에는 존속살해, 영아 살해, 촉탁·승낙 살인죄, 자살 사주, 위계위력 살인죄, 살인 예비 음모죄 등이 있으며, 특히 형법 제252조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규정이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다.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코마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족들이 고통을 종료시키고자하거나 병원비 부담으로 비자발적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56) 불교는 죽음을 하나로 보는 生死一如의 일원론적 관점이기에, 불교에서의 죽음 이해는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生死로부터의 해탈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웰다잉은 잘사는 것 즉 웰빙이 되는 것이다.

나오며, 지켜보는 가족의 정신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아 중병을 앓는 환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 ④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단순한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당장 고통만을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점, 특히 개개인이 갖춘 생명 주권이 결코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선 안 된다는 점 ⑤ 어떻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약이 아닌 독이기에 책임감 있는 의료인은 결코 환자에게 독을 처방하지 않는다. 특히 면추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선불리 선택되면 안 된다는 점 ⑥ 안락사가 이상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락사를 빙자한 살인이 벌어질 수 있는 점⁵⁷⁾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가 부정되다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이후 연명의료중단⁵⁸⁾을 (치료 및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죽음에 이른 때에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조치를 안 하는 경우로 인위적 개입이 적고 온전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를)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⁵⁹⁾ 判例로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으며⁶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다⁶¹⁾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가 존엄사법 제정을 권고한바, 2016년 1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⁶²⁾

57) 간호사나 의료인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안락사를 진행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성 약물들도 잘 관리하지 못해 의료인 중에도 중독자가 나오고 있다.

58) 독일에서는 수동적 자살(passiver Suizidmord)로 보고 있다. 연명의료장치 제거문제는 카렌 퀸란 사건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생명윤리에 관한 법적 접근에 관해서는 김정오 외 5인 공저, 앞의 책, 347-349쪽 참조.

59) 다만 연명의료중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질병이 심한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의 불가하여)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때도 있어 존엄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 반적으로 존엄사라 칭하고 있다.

60) 보라매병원 사건(대판 2004.6.24., 2002도995)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데도 경제 여건상 치료를 거부한 사례로 무의미한 치료중단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규호, "생명과 의료 그리고 형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20.12, 274-275쪽 참조.

61) 소극적 안락사, 무의미한 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9년 김 할머니 사건(대판 2009.5.21., 2009다17417)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령이 제정되면서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 사용하고 있다.

62) 다만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 연장이 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의료에 집착하기 때문에 연명의료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칫 잘못해서 치료중단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휘말릴까 봐서 소극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 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면 연명의료중단이 적법이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에 관해서는 이규호·김경동, "안락사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제63권 제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7, 34-45쪽 참조.

IV. 결어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안락사 문제를 연기론적 생명관과 지악수선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고찰, 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의 문제를 현행 법까지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불교는 모든 세상의 근본이 연기임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는 연기적 세계관이자 지악수선의 윤리관이다. 다만 선악 분별이 요구되어 번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별심 자체를 없애야 한다. 안락사 등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도 선악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도 불교는 무아(無我)와 공(空)의 경지에서 실상(實相)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뿐이므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불교의 모든 판단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안락사의 문제 역시 봐야 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적이다가 현재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추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라도 생명보호의 원칙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면서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불치의 질병인 식물인간을 포함한 환자에 대해 이루어진다면 불교의 자타불이 생명윤리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 원광 대학교, 2011.
- 김경화,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동아대 박사논문, 2001.
- 김성규, 「대승기신론 강설」, 통섭출판사, 2020.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김재윤, 「생명의 형법적 보호」, 전남대 출판부, 2014.
- 김종욱, “불교생명윤리총론”,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06.
- 김종욱, “불교생명윤리총론”, 「불교 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움」, 2008.
- 김정오 · 최봉철 · 김현철 · 신동룡 · 양천수 · 이계일,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22.
- 김현철 · 고봉진 · 박준석 · 최경석,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 김혁돈,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비교법적 제안”, 「단국대 법학논총」 제33권 제 2호, 2009.
- 김혁돈, “치료중단 자실인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3.
- 미산 스님, “생명조작”, 「불교 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움」, 2008.
-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12.
- 박미숙 · 강태경 · 김현철, 「일명 웨다임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KIC, 2016.
- 박수현, 「생명윤리와 법의」, 유원북스, 2020.
- 법륜불자교수회, 불교와 사회의 만남, 자유출판사, 2010.
- 배종대, 「형법각론」, 흥문사, 1997.
- 선종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대검찰청, 2017.
- 선종수, “개별범죄론 I”, 「형사정책적 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형사법연구」, KIC, 2019.
- 손미숙, “연명의료중단의 형법 이론적 근거”,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이규호,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19.
- 이규호, “생명과 의료 그리고 형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20.
- 이규호, “생명윤리법과 판례 고찰”,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이규호, “불교와 사형제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6.
- 이규호, “원효사상과 인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7.
- 이규호, “낙태와 불교의 생명관”, 「학회창립 30주년 한국교수불자대회 자료집」, 2018.
- 이규호·김경동, “안락사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제63권 제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이석배, “착상전 유전자진단과 산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정당성”,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 2012.
- 이석배,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동아법학」 제42호, 동아대 법학연

- 구소, 2008.
- 이석배·이원상,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임귀속」, 법문사, 2003.
-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 이인영, 「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 현실」, 삼우사, 2009.
- 이일하, “생명의 진화와 불교”, 「불교 문화」, 대한불교진흥원, 2021.
-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 이정훈, “소극적 안락사와 법과 종교의 경계에 선 성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 법철학회, 200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 법문사, 1986.
- 임 응,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
- 임 응, 「형법각론」, 법문사, 2012.
- 안동준, 「형법총론」, 학현사, 1998.
- 윤종갑, “열반경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공과 실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5.
- 조규범,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선대 법학논총」 제17집 제1호, 2010.
- 장성익, 「생명윤리 논쟁」, 풀빛출판사, 2014.
- 장한철,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전북대 동 북아법연구소, 2016.
-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83.
- 정영일, 「형법강의 총론」, 학림사, 2013.
- 탁희성 외 19명,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KIC, 2019.
- 호진 스님, “무아설에 대하여”, 「불교와 사회의 만남」, 자우출판사, 2009.
-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B. Faure, “Etat d'urgence sanitaire et pouvoir municipal”, AJDA 2020, Dalloz.
- Erdle, Infektionsschutzgesetz, Kommentar, 2016.
- HUMAN RIGHTS WATCH, MARCH 19, 2020.
- Ipas Africal Alliance, Making change happen : a review of progressive abortion policy change in Africa, 2016.
- K.C.Lauta, Disaster Law, Routledge, New York, 2015.
- Margaret C. Jasper, The Right to Die, NY:Ocean Publications, Inc.,2000.
- OHCHR, Human Rights :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Inter – Parliamentary Union, 2016.
- Schaff, E.A., Mifepriston : ten years later. Contraception, 81(1). 2010.

〈국문초록〉

본고는, 생명윤리의 문제인 안락사 문제를 연기론적 생명관과 지약수선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고찰한 논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가 안락사에 대한 불교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나아가 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의 법적 문제,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까지 연결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생명으로의 개개 유기체는 대사·생식·진화를 하므로 생명현상을 이 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모두 상호의존성과 연기성이므로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세상의 근본이 연기임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는 연기적 세계관인 것이다. 지약수선의 불교적 윤리관은 선악 분별이 요구되어 번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별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볼 때, 불교적 시각에서 안락사 등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선악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절대 선’을 지향하기에 선악 이전의 경지인 무아(無我)와 공(空)의 경지에서 실상(實相)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뿐이다. 이런 무아와 공의 경지에서는 자기를 넘어 자타불이로 자비가 확산되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불교의 모든 판단은 자비의 실천에 기여 가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적이다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추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남용방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식물인간 상태의 불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생명 유지상 필요한 의료조치를 부작위하거나 또는 부착된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자타불이 생명윤리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주제어

불교 생명윤리와 안락사, 불교와 안락사, 불교와 소극적 안락사, 불교와 존엄사, 불교 생명윤리와 소극적 안락사

| 논문투고일자: 2022.10.24

| 논문심사일자: 2022.12.24

| 게재확정일자: 2022.12.31